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27호

대신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 유예 승인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09(2015.07.16.)호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승인된 영등포구 신길동 116-18 외2필지 상 대신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 유예를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18년 7월 19일

서울특별시

■ 대신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승인의 유예 승인 내역

- 시장정비사업의 명칭 : 대신시장 정비사업
-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 : 대신시장 정비사업 조합(조합장 안연봉)
- 정비구역의 위치 : 영등포구 신길동 116-18 외 2필지
-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: 2015.7.16.
- 사업추진계획 승인 실효 유예기간 : 2년(2018.7.17.~2020.7.16.)
- 실효유예 신청사유 : 시공사 선정 및 조합원 의견수렴 등 사업시행인가 신청 지연